

(별지 제2호 서식)

【서류명】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만으로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권주장】

【일본국 특허출원번호】

【특허출원일자】

【신청이유】

【제출서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명칭】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명칭】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본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된 선행기술】

【명칭】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해당 특허출원의 청구항 번호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 특허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 【신청이유 추가 설명】 )

※ 기재요령

1. 【우선권주장】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 기재요령 제10호가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2. 【신청이유】란은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근거하여 우선 심사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3. 【제출서류】의 【명칭】란은 서류의 제출일, 통지일, 공개일, 공개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 해당서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4.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및 번역문】을 기재할 때는, 일본특허청의 특허사정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사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일본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서 또는 거절사정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명시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및 번역문】을 기재할 때는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일본특허청에서 통지한 심사관련서류(특허사정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에 한한다)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일본 특허출원이 공개(등록공고 포함)된 경우에,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및 번역문】 및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및 번역문】은 한·일 특허청간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란에 제출생략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일본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으므로 제출 생략  
다만, 우선심사신청 후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서류들을 입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본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 해당 선행기술은 특허청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란에 제출생략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이므로 제출 생략  
다만, 비특허문헌인 경우 또는 우선심사신청 후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특허문헌을 입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문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비특허문헌이므로 제출  
한편, 해당 일본 특허출원에 선행기술에 의한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생략여부 및 이유】란에 선행기술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선행기술에 의한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제출하지 않음
8.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출원의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

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해당 특허출원의 청구항 번호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5	양 청구항은 기재형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일본의 청구항 1에 A라는 구성이 부가됨